

16. 租稅減免規制法施行令中 改正令(案)立法豫告

재정경제원공고 제1997-73호 1997. 8. 2

주요 골자

- 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에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확대·조정함.
- 나. 법인세 우대세율이 적용되는 공공법인에 추가되는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의 범위를 도로·항만시설 등 제1종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운영하는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으로 정함.
- 다.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을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소유자에서,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1주택소유자로 확대하고 저축계약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함.
- 라. 국내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자녀등의 국외교육비로 지출한 비용중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국외교육비의 범위를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자비유학의 인정을 받은 자녀등의 국외교육비로 한정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인 자녀등의 국외교육비의 공제한도를 1인당 연간 150만원으로 정함.

마. 증자후 2년간 증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서 자기자본과 납입자본금중 큰 금액의 5퍼센트이상을 증자한 법인으로 하고, 소득공제율을 증자금액의 10퍼센트로 정함.

바.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복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중복자산의 범위를 신용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으로 정함.

사.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의 요건을 1인 1통장으로서 3년이상 5년이하의 기간 동안 매월 1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 정함.

개 정 이 유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등임.

주택회보